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06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구합5169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○○○○공사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○○
	담당변호사 오○○
피 고	○○광역시 ○구청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○
	담당변호사 이○○
변 론 종 결	2024. 5. 3.
판 결 선 고	2024. 5. 3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22. 5. 13.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○○ ○구 ○○동 ○○○ 외 48[1] 필지의 토

1) 갑 제3호증(납세고지서)의 기재에 의하면, 재산세 부과 대상 토지가 '○구 ○○동 ○○○ 외 78건'이라고 기재되어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06

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143,120,460원 및 지방교육세 39,796,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당사자의 지위

원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, 별지1 기재 ○○ ○○ ○○동 ○○○ 외 52개 필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하고, 각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는 각 연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)등을 비롯하여 ○구 소재 111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.

나. 2020년 귀속 정기재산세부과 처분 및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

1) 피고는 2020. 9. 16.경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○구 소재 111개 필지에 대하여 재산세 합계 1,243,049,060원, 지방교육세 합계 185,210,000원 총 1,428,259,060원을 부과·고지하였다(이하 '정기재산세부과 처분'이라 한다).

2) 원고는 위 정기재산세부과 처분 중 이 사건 52번 토지(○○동 ○-○)에 대하여 피고가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에 불복하여 2020. 12. 7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, 조세심판원장은 2022. 1. 13.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나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1. 12. 28.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지방세특례제한법'이라 한다) 제84조 제2항(이하 '이 사건 감경조항'이라 한다)에서 정한 사권제한 토지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심판 청구 중 일부

있으나, 피고가 해당 남세고지서 대상 토지의 구체적 필지를 48개 필지로 특정하여 각 부과세액을 을 제12호증으로 제출하였으므로, 이와 같이 정정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06

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(이하 '종전 조세심판결정'이라한다).

다.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

1) 피고는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,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연번 1 내지 35, 연번 37, 연번 40 내지 51의 48필지(이하 위 토지들만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쟁점 토지'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토지들이 각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나 이 사건 감경조항 대상 토지는 아니라고 본 다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재산정하여[2] 2022. 5. 13.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재산세 합계 143,120,46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39,796,280원 총 182,916,740원을 부과·고지하였다(이하, 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을 각 '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'이라 한다).

2)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에 불복하여 2022. 8. 5.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심판청구가 2022. 12. 7. 기각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호증, 을 제1, 1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

이 사건 각 쟁점 토지는 공공시설인 항만 설치를 위한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에도 과세기준일인 2020. 6. 1.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되므로,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세율 50%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피고

2) 이 사건 각 쟁점 토지에 대하여 산정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별지1 기재 토지 중 연번 52의 ○○동 0-0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, 그 현황이 제방으로서 비과세 대상인 토지(연번 36, 38, 39 토지)에 대하여는 원고가 기 납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공제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06

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취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 즉 '미집행된 토지'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, 이 사건 각 쟁점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이 이루어져 계속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된 토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점 토지를 항만시설 및 그 부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외부적 제한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

3.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관계 규정

별지2 기재와 같다.

나. 관련 법리

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(대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감경조항은 "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"이라는 제목 아래 규정되어 있고,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'국토계획법이라 한다)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(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"라고 규정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해당 계획이 미집행된 토지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06

한편 2016. 12. 27.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"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(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"고 규정하고 있었는데, 2016. 12. 27.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'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'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감경조항과 같이 개정되었다. 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,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).

다. 구체적 판단

위와 같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정 경위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건대,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2, 3, 5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6, 14,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각 쟁점 토지는 도시계획시설(항만)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,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○○광역시장은 2002. 7. 22. ○○ ○구 ○○동, ○○동 등 일대 3,561,000㎡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'인천북항'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(항만)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한 다음, 2012. 6. 4. 일부 항만선형의 변경사항, 부두조성공사 준공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 ○○ ○구 ○○동, ○○동 등 일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06

3,344,410㎡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.

② ○○광역시장은 2018. 12. 24.과 2019. 10. 28.에 이 사건 각 쟁점 토지를 포함한 ○○ ○구 ○○동 ○○○-○ 번지 일원 1,214,935.7㎡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각 하였다.

③ 이 사건 각 쟁점 토지는 위와 같은 실시계획변경 인가 이후 과세기준일인 2020. 6. 1. 및 현재까지 모두 토지이용계획열람원상 '항만'으로 지정되어 있고, 실제로 위 실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부지 내지 항만배후단지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달리 해당 토지를 항만시설 부지 내지 항만배후단지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시설물 설치 및 건축 등을 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호○○

판사 신○○

판사 임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06

별지1

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내역

연번	법정동	본번	부번	재산세	지방교육세	합계
1	○○동	639	0	344,685	68,937	413,622
2	○○동	640	0	34,754,157	2,896,180	37,650,337
3	○○동	644	0	3,160,676	632,135	3,792,811
4	○○동	645	0	24,717	4,943	29,660
5	○○동	646	0	5,082	1,016	6,098
6	○○동	652	0	2,803	561	3,364
7	○○동	652	2	124,674	24,935	149,609
8	○○동	652	3	93,716	18,743	112,459
9	○○동	653	0	117,904	23,581	141,485
10	○○동	653	3	11,912,531	2,382,506	14,295,037
11	○○동	396	0	4,786,427	398,869	5,185,296
12	○○동	396	1	246,031	28,945	274,976
13	○○동	396	10	12,655,539	2,531,088	15,186,627
14	○○동	396	12	54,498,828	4,541,561	59,040,389
15	○○동	396	13	34,642,257	2,886,863	37,529,120
16	○○동	396	14	1,136,813	227,363	1,364,176
17	○○동	396	16	10,593,665	882,805	11,476,470
18	○○동	396	17	5,257,000	1,051,400	6,308,400
19	○○동	396	19	5,985,270	1,197,054	7,182,324
20	○○동	396	20	5,605,852	467,154	6,073,006
21	○○동	396	21	6,568,069	547,339	7,115,408
22	○○동	396	22	74,530	14,906	89,436
23	○○동	396	23	394,806	78,961	473,767
24	○○동	396	25	2,774,199	554,840	3,329,039
25	○○동	396	26	2,825,576	565,115	3,390,691
26	○○동	396	3	61,447,125	5,120,602	66,567,727
27	○○동	396	5	13,220,460	2,644,092	15,864,552
28	○○동	396	6	13,925,270	2,785,054	16,710,324
29	○○동	396	7	27,187,731	5,437,565	32,625,296
30	○○동	396	9	5,467,280	1,093,456	6,560,736
31	○○동	397	0	110,372	22,074	132,446
32	○○동	397	1	603,324	120,665	723,989
33	○○동	397	10	509,505	101,901	611,406
34	○○동	397	15	101,490	20,298	121,788
35	○○동	397	16	40,656	8,131	48,787
36	○○동	397	17	-9,496	-1,899	-11,395
37	○○동	397	18	229,264	19,105	248,369
38	○○동	397	19	-9,432	-1,886	-11,318
39	○○동	397	20	-7,755	-1,551	-9,306
40	○○동	397	23	99,196	19,839	119,035
41	○○동	397	7	19,311	3,862	23,173
42	○○동	397	8	294,070	58,814	352,884
43	○○동	593	0	5,313	1,063	6,376
44	○○동	594	0	59,297	11,859	71,156
45	○○동	595	0	2,626,059	525,212	3,151,271
46	○○동	595	1	357,383	71,477	428,860
47	○○동	595	2	1,859,098	-186,427	1,672,671
48	○○동	595	4	398,466	-39,958	358,508
49	○○동	595	5	198,272	-19,883	178,389
50	○○동	595	6	325,883	65,177	391,060
51	○○동	595	7	1,098,524	-110,158	988,366
52	○○동	1	1	-185,622,016	-	-185,622,016
총계				143,120,457	39,796,284	182,916,741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06

별지2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1. 12. 28.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84조(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

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, 지상건축물,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(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.

②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(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③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3. "공공시설"이란 도로·공원·철도·수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.
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공공시설)

법 제2조제1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항만·공항·광장·녹지·공공공지·공동구·하천·유수지·방화설비·방풍설비·방수설비·사방설비·방조설비·하수도·구거(구거: 도랑)

(끝)